

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취업 활성화,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각 호 분야에 서로 협력한다.

1.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협조 체제 구축 및 운영
2. 재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노력
3. 각 기관이 보유한 연구 및 교육인프라에 대한 상호교류
4.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직원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상호 노력
5. 그 밖의 양 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

제3조(비밀유지)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해 취득한 상대 기관의 기밀사항을 상대 기관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② 양 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내용 중,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한다.

제4조(협의 조정) 양 기관은 신의 성실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,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5조(협약의 해지) 양 기관은 본 협약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합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제6조(효력발생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기간은 양 기관의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7조(협약의 추가 및 변경) ① 본 협약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,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 협약내용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 ② 본 협약서 제2조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세부협약을 체결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의 이행 및 해석) 양 기관은 이 협약을 준수하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,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의 대표가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1월 23일



국립강릉원주대학교
GANGNEUNG-WONJU NATIONAL UNIVERSITY



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
GANGWON STATE GANGNEUNG MEDICAL CENTER

총장 박 덕 영

원장 최 안 나

부속 약정서

제1조(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의 서비스 이용 지원)

“국립강릉원주대학교” 교직원과 직계존비속이 “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”의 종합검진 및 장례식장 서비스 이용 시 다음 표와 같이 감면율을 적용한다.

구분	감면대상	감면율	비고
1. 종합검진	○ 직계존비속 범위 - 본인, 배우자, 자녀 -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20%	개인 및 단체종합검진에 한함 (공단검진제외)
2.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	※ 첨부서류 - 임직원 : 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	20%	안치실, 분향실, 접객실 사용료에 한함

제2조(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의 서비스 이용 시 준수 사항)

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의 종합검진 및 장례식장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.

1. 신청서 작성 : 이용 할인 신청서(병원 내 구비)
2. 증빙서류 제출 : 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3. 이용료 수납 전 위 관련서류 제출로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할인을 적용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시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.

2026년 1월 23일

